전남대학교와 국내외 대학간 공동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2.2.8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863호, 2022.2.8, 일부개정]



전남대학교 062-530-1154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전남대학교 학칙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대학교 (이하 "본교"라 한다)와 국내·외 대학 간 공동·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·외 대학 간 공동·복수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-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"공동학위"라 함은 본교 학위과정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국내·외 대학과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 - ② "복수학위"라 함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국내·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
제4조(교육과정 공동운영 방법)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

- 1. 외국대학 소속 전임교원 초빙에 의한 수업
- 2. 외국대학 소속 전임교원과 본교 전임교원과의 협동수업(Co-Teaching) 이 경우 외국대학 전임교원이 최소 당해 수업시간의 2분의 1이상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우리대학 학생의 국내·외 파견에 의한 수학
- **제5조**(운영주체 및 협정체결) ① 제3조제1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제3조제2항의 공동학위 수여는 본교와 교육과 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내·외 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.
 - ② 제3조제2항의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내·외 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.
 - ③ 협정에는 국내·외 대학과 공동·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위종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④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·복수학위 과정에 관한 협정체결은 학무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석?박사 학위과정에 관한 협정체결은 미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6조(운영규모) ① 국내 타 대학과 공동·복수학위과정 운영인원은 각 학년별 입학정원의 10% 범위에서 운영한다. 다만,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학과(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)는 그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<개정 2022.02.08.>
 - ② 외국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과정 운영인원은 양 대학과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.
- 제7조(학위수여) ① 공동·복수학위는 본교 학칙 및 대학(원) 교학규정에 정하는 사항과 국내·외 대학과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.
 - ② 본교 학생이 공동 복수학위를 중도 포기할 경우 본교 학칙 제43조, 제59조 및 제7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장 본교 학생의 국내 타 대학 및 외국대학 수학

제8조(지원자격) 국내·외 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과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- 1. 신입생의 경우 교수회의 또는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자
- 2. 재학생의 경우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(3.0)이상인 자이고, 석·박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+(3.5)이상인 자로서,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3.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학과(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)에 재학 중인 자<개정 2022.02.08.>
- 제9조(학점인정 등)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전남대학교와 타 대학교간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, 국내·외 대학과 협정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0조(수학기간) ① 국내 타 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동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과정 특성에 따라 대학 간 수학기간에 차이를 둘 수 있으나, 반드시 2학기 이상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내용에 따른다.<개정 2022.02.08.>
 - ② 외국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.
- 제11조(학위 논문심사) ① 국내 타 대학 및 외국대학에서 정한 학칙을 준수하되, 협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.
 - ② 논문심사위원은 국내 타 대학과 외국대학 소속의 위원을 포함하되 협정에 의하여 따로 구성한다.

제3장 국내 타 대학 및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

- 제12조(지원자격) ① 국내 타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공동·복수학위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자로 한다.
 - 1. 신입생의 경우 소속대학의 총장이 인정한 자
 - 2. 재학생의 경우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(3.0)이상인 자이고, 석·박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+(3.5)이상인 자로서,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 - 3.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학과(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)에 재학 중인 자<개정 2022.02.08.>
 - ② 외국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공동·복수학위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양 대학간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.
- 제13조(수학기간) ① 국내 타 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동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과정 특성에 따라 양 대학 간 협정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외국대학과의 공동·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.
- **제14조**(학위 논문심사) 국내 타 대학 및 외국대학 논문심사와 별도로, 본교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. 본교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의 경우 1인 이상, 박사의 경우 3인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제15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제1863호,2022.2.8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